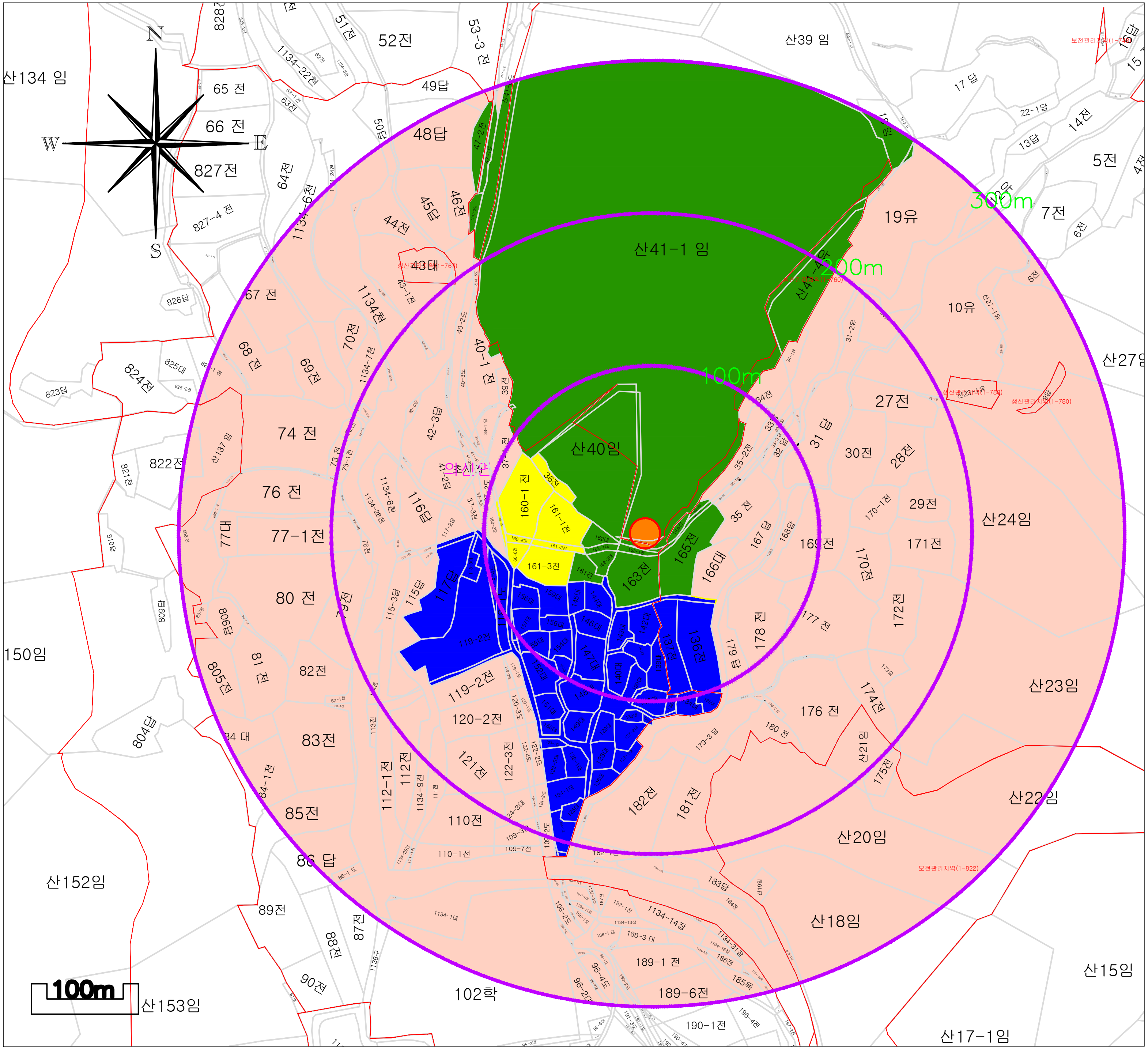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전라남도 기념물 216호
진도초하리무환자나무

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 41-

범 례

- 도지정문화재
- 100 ~ 300(m)

구 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
1 구 역	개별 심의	
2 구 역	건물 최고높이 5.0m 이하	건물 최고높이 7.5m 이하
3 구 역	건물 최고높이 8.0m 이하	건물 최고높이 12.0m 이하
4 구 역	진도군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 사항	-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・재축을 허용함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-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는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함. - 높이 3m 이상의 절・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 법면,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-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(단,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-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-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입회조사 ・표본조사・시굴조사・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)를 실 (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.) -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 -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 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.	